

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4-H활동지원 기금운영
조례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
연장하여 지속적으로 구미시 4-H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일몰기간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
-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

3. 조례안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동법시행령 제3조

「한국4-H활동 지원법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

라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 별첨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2015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생 략)	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5년</u> <u>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② ----- <u>2020년</u> <u>12월 31일</u> -----.

관 련 법 령

◎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◎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◎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

제5조 (경비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농촌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 장	오세출
	담 당	주대현
	담 당 자	옥옥대 (480-4223)